

# 노동관련 각종 요율표

## 2020년도

### ○ 건강보험요율

년도	보험료율
2018	보수월액 × 6.24%
2019	보수월액 × 6.46%
2020	보수월액 × 6.67%

■ 직장보험료 부과등급제 폐지(2007.1.1)로 보험료 산정 보수기준이 종전 "표준보수월액"에서 ⇒ "보수월액"으로 변경됨.

■ 가입자부담 3,335(50)%, 사용자부담 3,335(50)%씩 각각 부담

■ 노인장기요양보험 : 건강보험료의 10.25%(2020년 인상)

### ○ 연금보험요율

년도	보험료율
2018	표준소득월액의 9%
2019	표준소득월액의 9%
2020	표준소득월액의 9%

■ 가입자부담 4.5(50)%, 사용자부담 4.5(50)%씩 각각 부담

### ○ 고용보험료율 산정기준

사업별	보험료율	산정기준
실업급여 (공동 부담)	16/1,000 (1.6%)	사용자부담 8/1,000(0.8%) 근로자부담 8/1,000(0.8%)
고용안정사업· 직업능력 개발사업 (사용자 부담)	2.5/1,000 (0.25%)	상시근로자 150인 미만
	4.5/1,000 (0.45%)	상시근로자 150인 이상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
	6.5/1,000 (0.65%)	상시근로자 1,000인 미만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 제외업체
	8.5/1,000 (0.85%)	상시근로자 1,000인 이상 기업 및 국가,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

■ 실업급여요율, 고용안정, 직업능력 전년대 동일

### ○ 산재보험료율(천분율)

사업종류	년도		
	2018	2019	2020
건물등의종합관리사업	17.5	13	8
기타의각종사업	11.5	9	9
도. 소매및소비용품수리업	10.5	8	8
사업서비스업	10.5	8	8

■ 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 제14조 제3항 및 제4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사업종류별 보험요율을 고시함.

### ○ 노무비율(백분율)

사업종류	년도				
	2016	2017	2018	2019	2020
일반건설공사(갑)	27 (31)	27 (30)	27 (30)	27 (30)	27 (30)
일반건설공사(을)					
중건설공사					
철도 또는 궤도신설공사					

□ ( )안은 하도급 노무비율

■ 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건설공사의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같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보수총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할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을 고시함.

### ○ 두루누리 사회보험(고용,연금보험료 일부지원)

년도	월평균보수 / 지원율
2018	1,900,000 미만(고시기준 이상 소득자 제외) 5인미만 신규가입자 90%, 기존가입자 40% 5인이상 신규가입자 80%, 기존가입자 40%
2019	2018년과 동일
2020	215만원 미만(고시기준 이상 소득자 제외) 1~4인 신규가입자 90%, 기존가입자 30% 5~9인 신규가입자 80%, 기존가입자 30%

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,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2 및 제73조의3 규정에 의하여 지원내용을 고시함.

### ○ 최저임금 및 기준임금

년도	최저임금		
	시간급	일급	월급
2017	6,470	51,760	1,352,230
2018	7,530	60,240	1,573,770
2019	8,350	66,800	1,745,150
2020	8,590	68,720	1,795,310

□ 최저임금은 2020.1.1 ~ 2020.12.31까지 적용

□ 월급은 월 209시간 기준(2011.7.1부터 5인 이상 의무적용)

### ○ 장애인 의무고용률 및 고용부담기초액(원)

구분	년도		
	2018	2019	2020
국가및지자체,공기업및준정부기관, 기타공공기관및지방공기업	3.20%	3.40%	3.40%
민간사업주	2.90%	3.10%	3.10%
국가및지자체 (공무원이아닌근로자)	2.90%	3.40%	3.40%
고용부담기초액	812,000	945,000	1,048,000

□ 2020년 장애인 의무고용률

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장애인고용 의무적용대상 공사실적액을 고시함.

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고용부담기초액을 고시함.

### ○ 임금채권보장기금,석면피해분담금사업주부담금 비율

년도	임채부담금비율	석면부담금비율	비고
2016	0.6/1,000	0.04/1,000	
2017	0.6/1,000	0.03/1,000	
2018	0.6/1,000	0.03/1,000	
2019	0.6/1,000	0.03/1,000	
2020	0.6/1,000	0.03/1,000	

■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비율을 고시함.(2011년부터 보수총액기준)

■ 석면피해구제분담금(2011년 신설). 2010.12부터 경감비율 감소(25%)